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5. 12.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5년 3월 27일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5. 6. 1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5년 10월 5일 이석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5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5. 11. 16.)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5년 11월 3일 이석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5년 11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차 및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2015. 11. 18, 2015. 11. 23.)에서 위 4건의 법률안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마.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2015. 12. 15.)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냉매의 사용단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적으로 감축 또는 폐기 의무가 부여된 물질인 냉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통계 구축을 위해 냉매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자동차제작자의 인증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이 10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확보하

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의설정 등의 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냉매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

게 제출토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라.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안 제45조제1항 및 제2항).

마.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및 제89조제6호의2 신설 등).

바.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6조).

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4. 부대의견

환경부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냉매 관련 신고와 동 안 제9조의4에 따른 관련 신고를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신고 양식 및 절차 등을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고시하거나 지침으로 정하여 통일된 방식·절차로 제출받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상시 측정)”을 “(상시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을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3을”로 한다.

제3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비산배출의 저감)”을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7항 중 “사업자”를 각각 “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2호나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⑮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에게”를 “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나”를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여부, 제16조나”로, “제38조의2제3항”을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4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중전의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8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89조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1조제2호의2를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46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4항·제15항 및 제89조제6호의2·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58조제3항·제5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시 측정) ①·② (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3조(상시 측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p> <p>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u>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① <u>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u></p>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② -----

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허가 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③ (생략)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 ⑨ (생략)

<신설>

<신설>

-----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3을 ---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

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자-----

-----.

④ -----
----- 자-----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 ③ (생략)

<신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

----- 2년 -----

② -----

----- 2년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소

<신 설>

1의2.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 1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 9. (생 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
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신 설>

7.·7의2. (생 략)

<신 설>

유자 또는 관리자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청문)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 9.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 13. (생략)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2의2. (생략)

3. ~ 13.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

8. ~ 13.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

-----.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2의5. (현행 제2호의2와 같음)

3. ~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신설>

5. ~ 14. (생략)

⑤ ~ ⑦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 14.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	--

비 용 추 계 서

법안비용추계3과 3-2015-127

의뢰인 : 환경노동위원회
접수일 : 2015년 11월 25일
회답일 : 2015년 11월 30일

담당 : 이은정 과장
 김윤미 분석관
내용문의 : (02)788-46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첨부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에 대한 재정수반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 제3조제3항은 대기오염정보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정안 제3조의2는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정안 제58조는 환경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¹⁾

가. 대기오염정보 전산망 운영(개정안 제3조제3항)

개정안 제3조제3항은 대기오염정보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그런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실시간대기오염도공개홈페이지(에어코리아)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미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수정안의 시행일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추계는 추계대상기간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본다.

나.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개정안 제3조의2)

개정안 제3조의2는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그런데 환경부는 2018년 환경위성 발사를 목표로 2012년부터 환경위성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2015년까지 총사업비 1,239억원 중 539억원 집행할 예정에 있다.²⁾ 또한 환경부는 2016년부터 환경위성을 관제하기 위한 국가환경위성센터 건립(총사업비 196억원)과 운영을 수행할 예정이고, 2016년 예산안에 30억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기자동차 성능평가(개정안 제58조)

개정안 제58조제14항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민간대행사업으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충전기설치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³⁾⁴⁾ 즉, 충전기 설치 사업은 이미 수행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정안 제59조제15항은 전기차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평가시설을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⁵⁾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안의 조문별 추가재정소요는 미미할 것으로 보므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1호에 해당한다.

4.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3과

과 장 이 은 정

예산분석관 김 윤 미

(788-4627, yoonmikim@assembly.go.kr)

2) 2016년 예산안상 환경위성개발과 관련한 사업비로 216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3) 2016년 예산안상 충전기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로 42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부가 직접 설치하는 공공급속충전기 설치예산으로 105억원(150기)이 편성되어 있다.

4)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시장 활성화계획」(2014.12, 정부부처 합동)상 정부(환경부)주관으로 설치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및 이에 대한 운영비용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5)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평가시설 운영비로 연간 2억원(2015년 예산 기준)을 지원하고 있다.